"모든 성매매 아동 · 청소년은 피해자"

인권위 "자발성 상관없이 아동 · 청소년 보호해야"

"피해 청소년 도움요청 어렵고 구매 · 알선자 악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매매 아동 · 청소년은 엄연한 피해자라며 이들을 '피해 아동 · 청소년'이라고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9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성매매 아동 · 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전향적인 태도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상 아동 · 청소년'을 '피해 아동 · 청소년'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아동 · 청소년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 '성매매에 이용된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 52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5.7세이고, 만 13~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응답자 중 약 61%의 아동 · 청소년이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문제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응답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성인은 신체적 능력, 경제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아동 · 청소년에 비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도 성인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 청소년을 '피해 아동 · 청소년'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 · 청소년을 '대상 아동 · 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때문에 피해 아동 · 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또한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 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 · 청소년을 '대상 아동 · 청소년'에서 '피해 아동 · 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 · 상습적 성매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 ·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 개정에 반대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 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은 도입됐다. 인권위는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1

제수용 과일 살펴보는 시민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9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여가부, 휴가철 불법촬영 경찰과 합동단속…17명 적발

여성가족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 근절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10명이 형사입건 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여가부는 7월~8월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과 서울지하철역을 대상으로 경찰관서와 서울지하철경찰대 등과 함께 불법촬영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수욕장 12명, 서울지하철 5명 등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촬영의 위험성이 높은 여름철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는 해수욕장과 지하철에서 시민과 피서객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수욕장 불법촬영 합동단속에서 불법 촬영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람들은 백사장 등 해변이나 수돗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또는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또 서울지하철 불법촬영 합동단속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사람들은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르며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특정된 일부 피해자에게는 조사과정 동석, 전문상담기관 연계 · 안내 등이 이루어졌다.

여가부에 따르면 적발된 사람 중 일부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는 '불법촬영'에 대한 국내 법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장기체류 목적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성범죄'라는 사항이 교육 · 안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일상 속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 합동단속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쇠고기 원산지 속여 판 업체들 무더기 적발

추석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거나 한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추석 명절 제수 ·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한 업소 1곳과 타지역에서 사육한 소를 장흥한우로 거짓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 한 시에서 정육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56)는 미국산 쇠고기 855㎏(1071만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2959만원어치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미국산 알목심 790㎏(860만원 상당)을 소비자가 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불고기감으로 만든 다음 가격표시판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적어 팔거나 미국산 갈비살 65㎏(202만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얇게 자른 고기는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으며, 업소 옆에 외국산 쇠고기를 보관하는 비밀공간을 둬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농관원은 국내산 한우로 판매 중인 쇠고기를 2차례 수거한 뒤 최첨단 쇠고기 원산지 DNA 분석법을 활용해 A씨 범행을 적발했다.

최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장흥한우를 사칭해 판매한 9개 업체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전남 농관원은 추석 전까지 제수 · 선물용 등에 대해 원산지 · 양곡 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슈 판결

주점 여주인 행선지 추궁하다 불지른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동기 · 내용 · 결과 등 죄질 매우 중해"

술집에 불을 질러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2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점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다른 세대까지 불길과 연기가 번지게 해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A씨의 범행으로 가게 주인은 생계수단인 주점이 전소돼 재산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또 "불로 인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도 크다"며 "범행이 A씨의 집착으로 인해 이뤄진 점 등 동기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1심에서 사건의 범행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5시46분쯤 전남에 위치한 B씨(40 · 여)의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등 2명이 화상을 각각 입었고, 주점도 불에 타 3748만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술에 취해 B씨의 주점을 찾은 A씨는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온 B씨의 행선지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 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